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나89527 판결 [점유회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김민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1. 경기주택도시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7. 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23377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불하고 공사자재를 구매하는 등 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22. 11. 7.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2023. 1. 2.자 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공사를 수급한 2018년경 원고의 사업장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에 비추어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할 만한 역량이 있었다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의 2018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1억 9,800만 원이 공사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9억 2,460만 원의 공사대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받은 증거로 제출한 ‘각 거래명세서’(갑 제12호증) 중에는 단순한 견적서도 포함되어 있고, 자재를 납품한 공사현장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5. 28.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작성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위 거래명세서들이 모두 원고 주장의 공사현장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명세서에 상응하는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명의의 영수증(갑 제11호증의 1 내지 3)도 합계 6,900만 원에 대하여만 작성되어 있을 뿐인바,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하도급업체에게 합계 312,442,845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여 그 주장의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위 영수증 합계액 6,900만 원은 C이 원고 대신 하도급업체에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는 7,8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택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추가 판단

가.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침탈자 또는 점유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악의의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점유를 침탈한 자가 획득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침탈자에게는 더 이상 반환할 점유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하여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5.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L, M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0. 11.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이 N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었음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점유회수청구권 행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수, 판사 김태홍, 판사 정영훈